

FSS/2112-25 : 자기주식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자기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9.30.~2012.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로, 회사의 부회장 겸 공시담당이사 B는 회사와 C간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의 자기주식 100만주(장부가액 102억원)를 담보로 제공한 뒤, 실물 출고한 다음 C 등의 차명 계좌에 입고시켜 장내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자기주식의 인출과 매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의 결산작업 과정에서 자기주식의 실물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처분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라 자기주식 102억원을 과대계상하고 불법행위 미수금(대손상각비 포함) 등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발생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11년에 자기주식을 부당인출하여 매각한 공시담당이사에 대하여 매각대금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었고, 자기주식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

하여 자기주식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여야 함에도, 자기주식 매각 관련 미수금을 계상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허위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 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505(외부 조회)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자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외부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중요성과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결과
- (2) 이미 계획된 타 감사절차로부터 입수될 증거가 동 경영자주장의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② 감사인은 자기주식에 대한 실재성 확인을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인 외부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대체적인 절차로 감사 시점에서의 날인된 주권보관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영업환경, 회사의 재무상황 등 제반 조건을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실재성 확인을 위하여 외부조회를 실시하는 등 감사절차를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